

# 치위생사 및 방사선사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이해와 서비스 제공요원 포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미애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e-mail : smile1929@naver.com

## The Comprehension of health care service bill of dental hygienist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 and the study of necessity of including the service supply resources

Mi-Ae Je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관한 방사선사와 치위생사의 의식을 분석하여 향후 건강관리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보건직(방사선사, 치위생사 등) 인력의 포함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된다.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경제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과 증진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증진은 체계적 접근법과 생활양식접근법으로 분류하는데, 건강정보와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동변화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생활양식접근법 사업의 방향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1].

전 세계적으로도 만성질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탈피하여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4].

이에 저자들은 의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방사선사와 치위생사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이해 및 타당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 요원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사선사와 치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국의 병원이나 의료관련 기관(대학, 대학교 포함)에서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사(183명)와 치위생사(176명) 총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다.

#### 2.2. 연구방법

개별 설문조사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차례의 예비설문을 시행한 후, 연구자와 실무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작성하였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인지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 제공서비스 내용의 인식 및 추가 항목의 필요, 서비스 제공 인적요원의 적절성 및 참여의향 빈도분석을 이용, 변수간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필요성 및 참여정도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연령과 근무년수별 필요성 및 참여의향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표 2] 서비스 제공인력 및 참여 정도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직종	치과위생사	176	49.0
	방사선사	183	51.0
연령	~30세	68	18.9
	31~37세	91	25.3
	38~44세	140	39.0
	45세~	60	16.7
교육 정도	전문대졸	127	35.4
	대학교졸	114	31.7
	대학원이상	118	32.9
근무지	의원급	108	30.1
	병원급	147	40.9
	종합/대학병원급	72	20.1
	대학(교)	32	8.9
근무 경력	~5년	78	21.7
	6~10년	129	35.9
	11~15년	116	32.3
	16년~	36	10.0
직위	사원	84	23.4
	계장/과장	65	18.1
	실장/팀장	180	50.1
	교수직	30	8.4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제공인력 적합	예	35	9.7
	아니오	324	90.3
보건직종 포함필요	예	306	85.2
	아니오	53	14.8
포함의 당위성 근거	보건(의료)교육을 받았으므로	227	74.2
	의료기관에 근무 하고 있으므로	48	15.7
	업무영역확대 차원에서	31	10.1
참여의향 정도	~5점	10	2.8
	6점	33	9.2
	7점	46	12.8
	8점	87	24.2
	9점	84	23.4
	10점	46	12.8

[표 3] 변수간 법안인지, 필요, 필요정도의 차이 분석

구분	법안 인지			법안 필요			법안필요 정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N	Mean	Std.D	
직종	치위생사	61	115	176	165	11	176	165	7.933	1.3974
	방사선사	45	138	183	115	68	183	115	7.504	1.1726
	$\chi^2/p$	4.371 / .037*		49.938 / .000**			t : 2.781 / .006**			
연령	~30	21	47	68	53	15	68	53	7.283	1.081
	31~37	26	65	91	76	15	91	76	7.197	1.255
	38~44	41	99	140	113	27	140	113	8.363	1.275
	45세~	18	42	60	38	22	60	38	7.737	1.178
	$\chi^2/p$	0.110 / .991		9.735 / .021*			f : 17.227 / .000**			
근무 경력	~5년	25	53	78	62	16	78	62	7.387	1.206
	6~10년	32	97	129	103	26	129	103	7.398	1.294
	11~15년	40	76	116	91	25	116	91	8.352	1.303
	16년~	9	27	36	24	12	36	24	8.000	.978
	$\chi^2/p$	3.344 / .342		3.064 / .382			f : 11.729 / .000**			
직위	사원	27	57	84	68	16	84	68	7.632	1.245
	계장/과장	20	45	65	55	10	65	55	7.618	1.434
	실장/팀장	45	135	180	129	51	180	129	7.736	1.326
	교수직	14	16	30	28	2	30	28	8.427	1.136
	$\chi^2/p$	6.333 / .097		10.400 / .015*			f : 2.868 / .037*			
근무 지	의원	32	76	108	86	22	108	86	7.593	1.332
	병원	35	112	147	100	47	147	100	7.600	1.407
	종합병원	23	49	72	64	8	72	64	7.922	1.173
	대 학(교)	16	16	32	30	2	32	30	8.400	1.133
	$\chi^2/p$	8.958 / .030*		18.284 / .000**			f : 3.699 / .012*			

[표 4] 변수간 서비스 제공인력 인식, 제공내용 추가 여부의 차이 분석

구분	제공내용 인식			제공내용 추가필요			적절한 추가 항목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암예방	치아건강	계	
직종	치위생사	45	131	176	145	31	176	20	125	145
	방사선사	38	145	183	32	151	183	10	22	32
	$\chi^2/p$	1.164 / .281			151.183 / .000**			5.675 / .017*		
연령	~30	23	45	68	29	39	68	4	25	29
	31~37	26	65	91	41	50	91	4	37	41
	38~44	25	115	140	88	52	140	16	72	88
	45세~	9	51	60	19	41	60	6	13	19
	$\chi^2/p$	10.312 / .016*			19.619 / .000**			4.696 / .195		
근무경력	~5년	37	41	78	36	42	78	4	32	36
	6~10년	16	113	129	67	62	129	11	56	67
	11~15년	22	94	116	59	57	116	11	48	59
	16년~	8	28	36	15	21	36	4	11	15
	$\chi^2/p$	35.425 / .000**			1.620 / .655			2.012 / .570		
직위	사원	33	51	84	39	45	84	9	30	39
	계장/과장	7	58	65	35	30	65	3	32	35
	실장/팀장	30	150	180	82	98	180	13	69	82
	교수직	13	17	30	21	9	30	5	16	21
	$\chi^2/p$	29.042 / .000**			6.967 / .073			3.558 / .313		
근무지	의원	22	86	108	49	59	108	7	42	49
	병원	22	125	147	74	73	147	14	60	74
	종합병원	25	47	72	32	40	72	4	28	32
	대학(교)	14	18	32	22	10	32	5	17	22
	$\chi^2/p$	19.073 / .000**			3.253 / .100			1.423 / .700		

[표 5] 변수간 참여정도의 차이 분석

구분	참여 정도			
	N	Mean	Std.D	
직종	치위생사	146	8.288	1.2488
	방사선사	160	7.919	1.449
	t/p	2.379 / .017*		
연령	~30	58	8.0179	1.457
	31~37	80	7.838	1.373
	38~44	116	8.440	1.152
	45세~	52	7.808	1.547
	f/p	4.386 / .005**		
근무경력	~5년	71	7.690	1.609
	6~10년	112	8.161	1.270
	11~15년	91	8.286	1.223
	16년~	32	8.219	1.362
	f/p	2.902 / .035*		
근무지	전문대졸	105	8.010	1.438
	대학교졸	102	8.362	1.124
	대학원이상	99	7.909	1.479
	f/p	3.130 / .045*		
근무지	의원	92	8.239	1.123
	병원	124	8.274	1.232
	종합병원	64	7.688	1.680
	대학(교)	26	7.731	1.663
	f/p	3.667 / .013*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진단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한 치위생사 및 방사선사의 인식도 및 필요성 및 적정성을 분석하여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올바른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관한 인지부족 및 항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내 여건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도입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공 서비스 내용에 치과질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적요원에 보건 의료의 기본적인 교육과 임상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직종의 포함이 필연적이다.

참고문헌

- [1] 남은우,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국제적인 향: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검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05-115, 2008.
- [2] 이애경, 이상이, 강임옥 외, 건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의 건강증진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4권, 제1호, pp.127-138, 2007.